

구미시 기본경관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0. 4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'07. 5. 17 경관법 제정에 따라 우리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 정책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형성 및 유도·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으며
-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가지와 자연지역의 개발여건과 경관적 특성을 검토하여 경관요소의 잠재력을 보전하고 극대화 하기위한 도시 경관형성 및 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며 실천 수단으로 경관설계지침을 통한 경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『구미시 기본경관계획(안)』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

2. 추진경위

- 2009. 4. 20 : 『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』 과업 착수
- 2009. 5. 28 : 착수보고회 개최
- 2009. 10. 21 : 중간보고회 개최
- 2009. 12. 4 : 시장 보고
- 2010. 2. 26 : 공청회 개최

구미시 기본경관계획(안) 주요내용

□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1) 계획의 배경

- 경관법의 제정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·관리 및 형성 필요
-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의 마련
- 경관형성 및 유도·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

2) 계획의 목적

- 구미시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만들기
- 성장주의, 획일주의 중심의 도시개발 지양
- 국제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첨단 도시 만들기
-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

□ 계획의 범위

1) 공간적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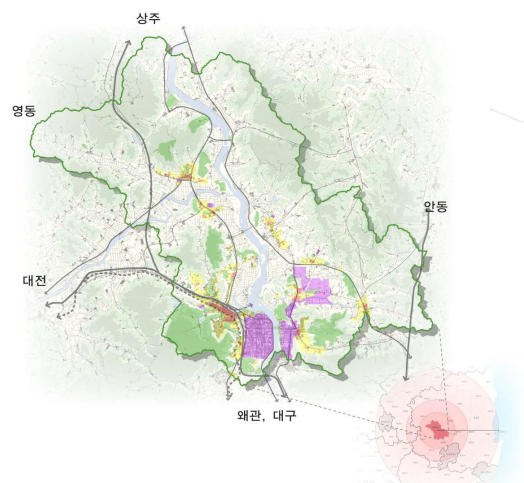
-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: 616.25km²

2) 시간적 범위

- 기준연도 : 2009년
- 목표연도 : 2020년

3) 내용적 범위

- 경관계획의 기본구상, 경관계획 수립
-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디자인지침 마련, 실행계획



□ 경관계획의 지위와 성격

1) 근거법(경관법)

○ 수립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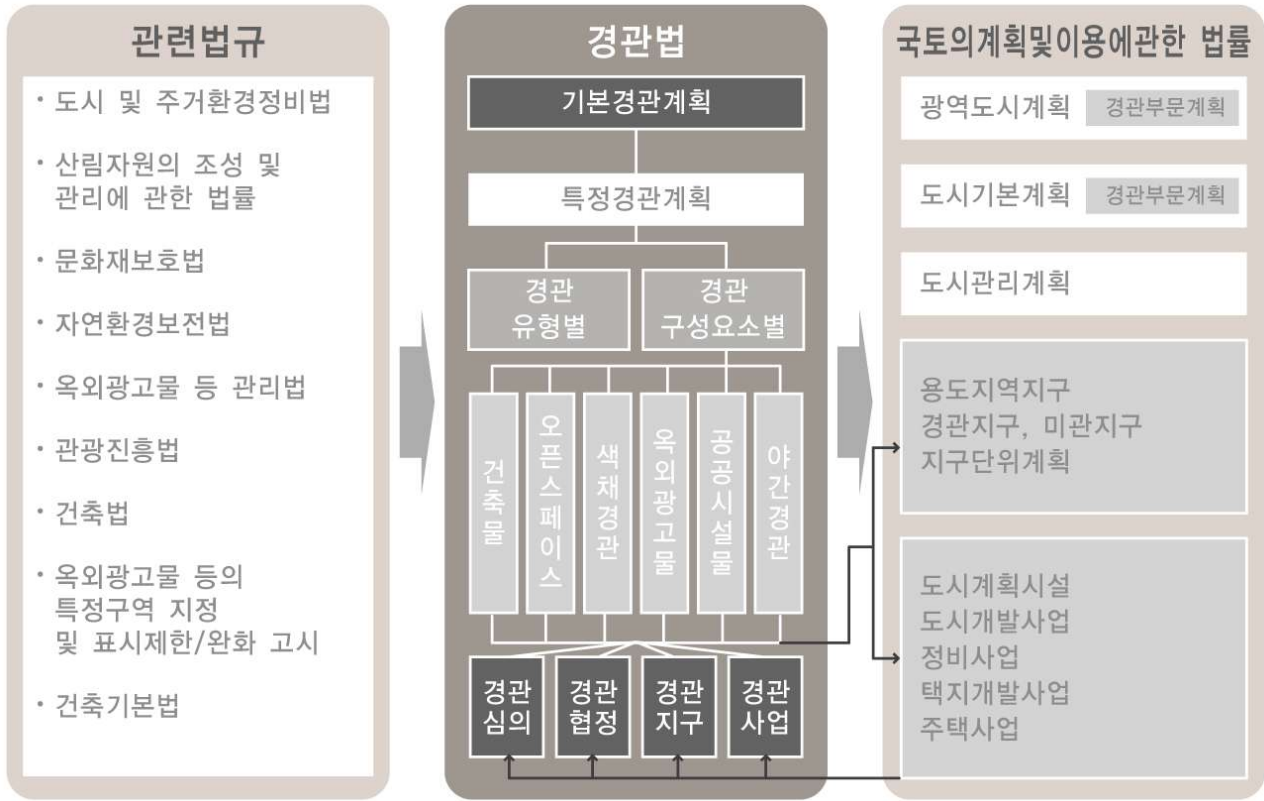
수립목적	-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 -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·경관사업·경관협정의 법적·제도적 근거 마련 - 경관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관리
주요내용	- 경관의 보전·관리·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-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-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 -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

2) 경관계획의 성격(경관계획 수립지침 제5절)

○ 기본경관계획

경관계획의 성격	
기본경관계획	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, 경관권역, 축,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, 경관을 보전·관리·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
특정경관계획	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(산림, 수변, 가로, 농산어촌, 역사문화, 시가지 등), 특정요소(야간경관, 색채, 옥외광고물, 공공시설물 등)을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,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

□ 기본경관계획의 위계



□ 경관계획의 수립방법 및 과정



□ 구미시 경관계획의 미래상

- 구미시의 장점으로 생각되는 수려한 자연과 오랜 역사,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경관적으로 보전 및 강화하도록 하며, 국가시책과 구미의 시책을 반영하여 구미시의 경관미래상을 설정



□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 및 전략

플향	경관의 보전
전략 1: 녹지를 연결한다. 전략 2: 조망을 보전한다. 전략 3: 물길을 살린다.	
옛향	경관의 관리
전략 4: 문화재를 관리한다. 전략 5: 문화를 이어준다. 전략 6: 문화를 만든다.	
미래향	경관의 형성
전략 7: 산업단지를 갤러리화한다. 전략 8: 첨단이미지를 부여한다. 전략 9: 구미를 상징화한다.	

□ 구미의 경관골격 설정

- 구미시 경관관리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경관골격을 설정하도록 하고, 특히 중점적인 경관관리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 및 관련사업을 집중하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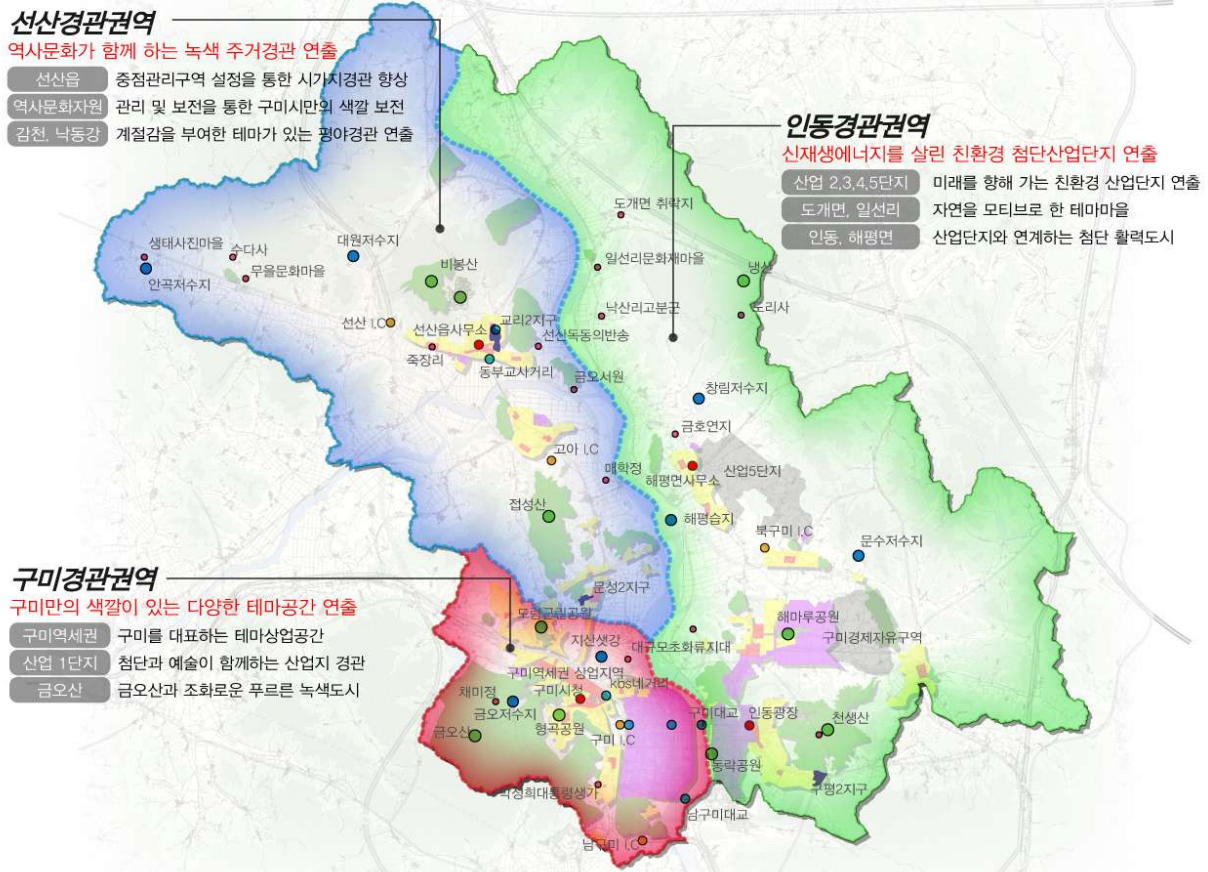


- 경관관리단위의 설정

경관골격				경관중점관리구역
경관권역	1권역-선산경관권역		도시기본계획상 선산생활권	선산읍 경관중점관리구역 구미역세권 경관중점관리구역 제1국가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
	2권역-구미경관권역		도시기본계획상 구미생활권	
	3권역-인동경관권역		도시기본계획상 인동생활권	
경관축	녹지경관축	녹지보전축	주요산지 보전축	낙동강 경관중점관리구역 906번 지방도 경관중점관리구역
		녹지연계축	도시 내 녹지유입축	
		도시형녹지축	금오산~천생산 연결녹지축	
	수변경관축	상징수변축	낙동강축	
		친수경관축	주요하천 보전축	
	도로경관축	고속도로경관축	1번, 45번, 55번 고속도로	
		간선도로축	구미시 내 통과 간선도로	
		보조간선도로축	구미시 통과 보조간선도로	
		철도경관축	경부선	
	테마경관축	상징경관축	906번 지방도	
		야간경관축	산업단지 내 주요도로	
		예술가로축	67번, 제5산단 연결도로	
		문화경관축	선산읍, 해평면 내 중요도로	
	생태회랑축		낙동강 주변 순환도로	
	구미체험축		각 권역 연결도로	
경관거점	녹지경관거점		주요산지 거점	-
	수변경관거점		주요저수지 거점	
	진입경관거점		구미시 주요진입부	
	이벤트경관거점		주요 교차로	
	문화경관거점		역사문화재 주변	
	권역중심거점		권역 내 주요 관공서	

□ 경관 권역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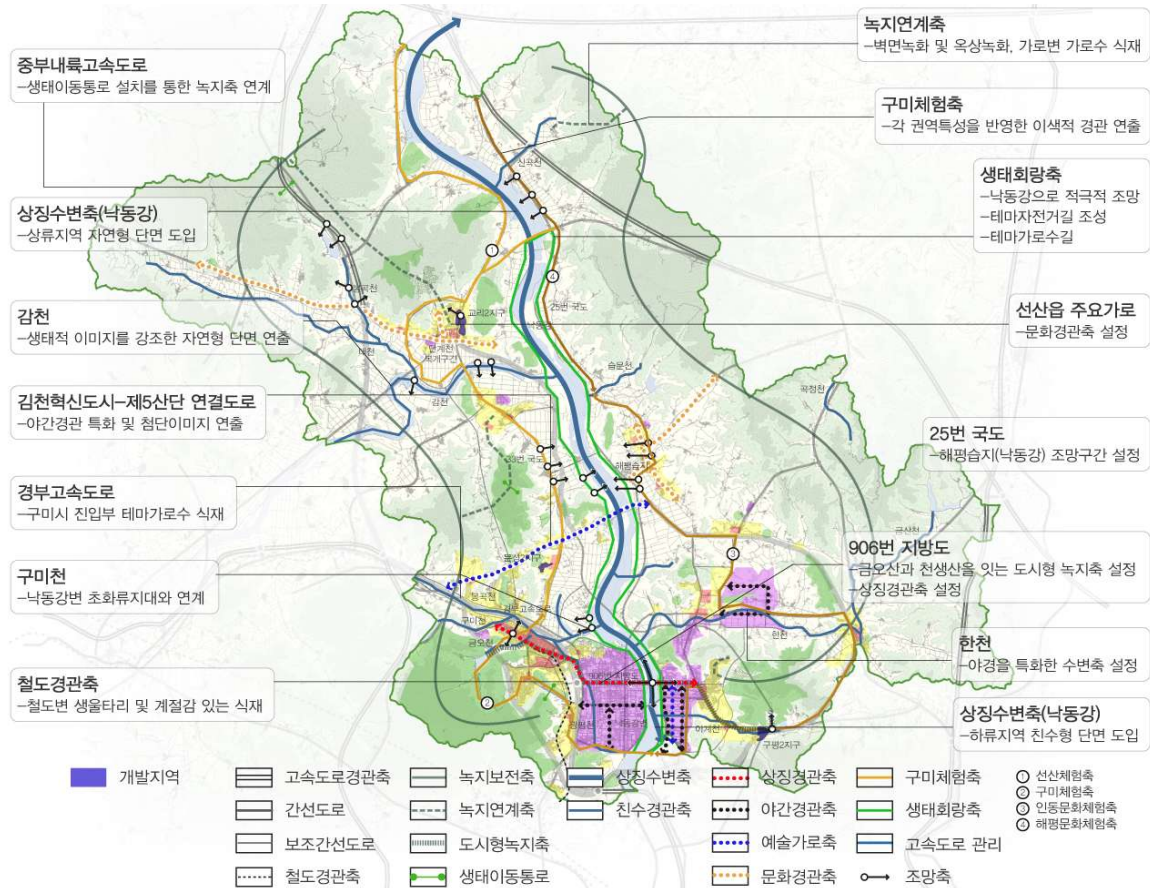
- 3개 권역별 경관 보전·관리·형성을 위한 기본방침 및 세부정비방안을 제시한다.



1권역 선산경관 권역	역사문화가 함께 하는 녹색 주거경관 연출 - 선산경관권역 내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관리를 통한 역사문화네트워크를 설정한다. - 선산읍 및 문성2지구, 교리2지구의 경관적 관리를 통한 생활경관을 향상한다. - 주요도로 및 마을에 테마를 부여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연출한다.
2권역 구미경관 권역	구미만의 색깔이 있는 다양한 테마공간의 연출 - 구미역세권 상업·업무가로에 대한 도시적 경관특성을 강화한다. - 금오산에 대한 조망관리를 통하여 산지와 조화로운 녹색도시를 조성한다. - 제1산업단지 및 낙동강변의 경관개선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전략경관을 형성한다.
3권역 인동경관 권역	신재생에너지를 살린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연출 - 점차 확장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테마를 부여하여 구미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한다. - 생태적 보호지역은 보전하고, 주요산지 및 하천은 이용가능한 경관자원으로 관리한다. - 주요 취락지에 대한 경관적 관리를 통해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도록 한다.

□ 경관 체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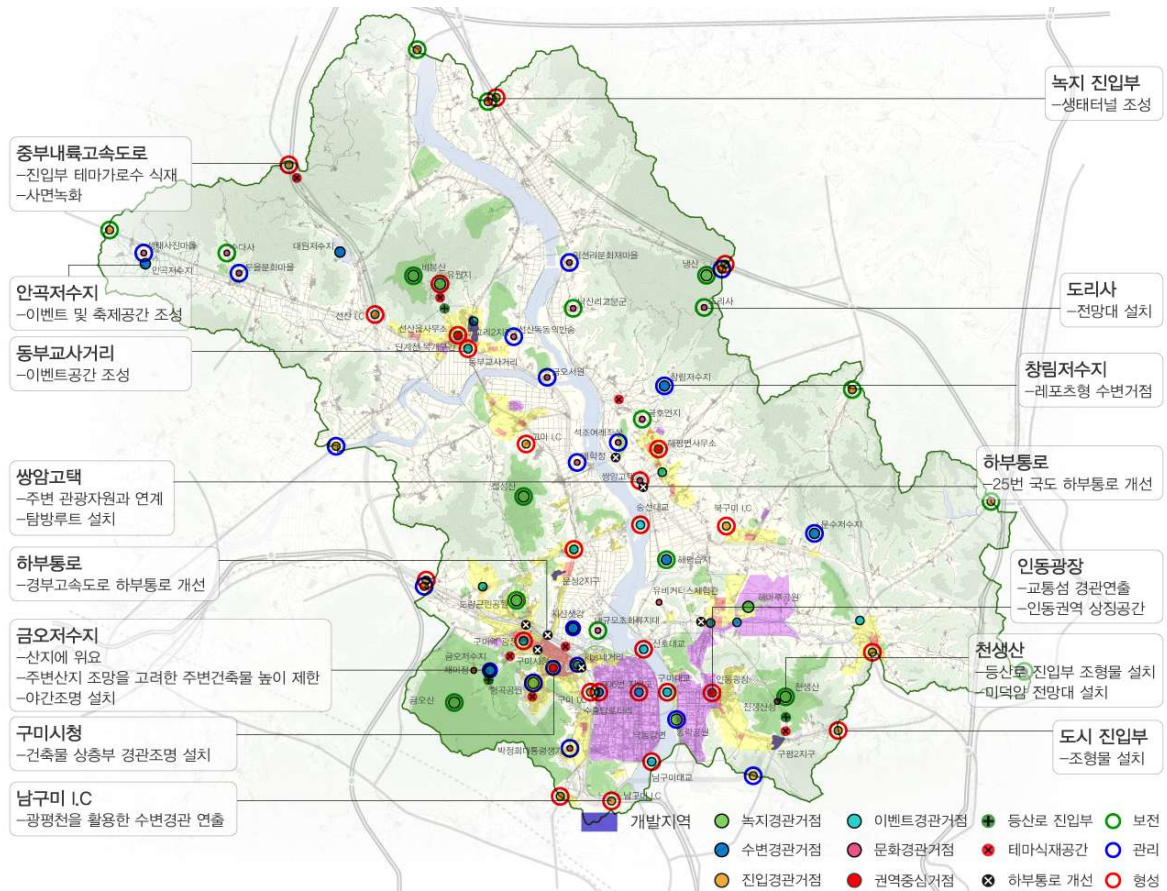
- 동일한 경관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유형을 6개로 분류하여 녹지경관축, 수변경관축, 도로경관축, 테마경관축, 생태회랑축, 구미체험축으로 설정한다.



녹지 경관축	• 금오산~천생산을 잇는 도시형 녹지축 설정 • 도시로의 녹지유입을 통한 녹지연계축 설정	• 주요산지를 보전하는 녹지보전축 설정 • 단절된 녹지축의 회복
수변 경관축	• 낙동강을 구미의 상징수변축으로 설정 • 구미천, 금오천에 친수공간 도입	• 감천, 봉곡천 등의 수변축 생태 보전 • 단계천, 광평천의 야간특화 수변축 설정
도로 경관축	• 주요고속도로의 상징적 이미지 연출 • 33번, 25번 국도변 낙동강 조망공간 설치	• 철도변 생울타리 및 계절감 있는 식재 연출 • 보조간선도로에 테마를 부여한 가로수 식재
테마 경관축	• 906번 지방도변 광고물, 건축물 관리 • 산업단지 일부구간을 예술가로축으로 설정	• 산업단지 주요도로를 야간경관축으로 특화 • 선산권역 주요도로를 문화경관축으로 설정
생태 회랑축	• 낙동강을 조망하는 생태회랑축 설정 • 각 권역특성을 살린 구간별 테마 부여	• 낙동강변 건강테마로 수변자전거도로 설치 • 가로시설물의 친환경재료 사용
구미 체험축	• 선산권 문화적 이미지를 반영한 선산체험축 • 인동권 예술적 이미지를 반영한 인동체험축	• 구미권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한 구미체험축 • 도개권 생태적 이미지를 반영한 도개체험축

□ 경관 거점계획

-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는 장소에 동질한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여 녹지경관거점, 수변경관거점, 진입경관거점, 이벤트경관거점, 문화경관거점, 권역중심거점 6개 거점으로 분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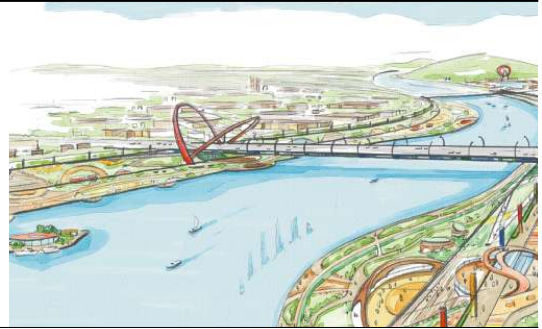
녹지경관 거점	• 각 권역을 대표하는 주요산지를 활성화 • 등산로 진입부에 자연소재 게이트 설치	• 조망공간을 특화 (전망대, 안내판 설치 등) • 시가지 주요공원을 녹지경관거점으로 설정
수변경관 거점	• 생태, 이벤트, 레포츠형 저수지를 조성 • 저수지변 친수공간(테크설치 등) 조성	• 주변자원과 연계하여 테마를 부여 • 저수지 주변 상업지 및 진입로 관리/개선
진입경관 거점	• 고속도로 진입부에 구미대표 이미지 연출 • 녹지연접진입부에 생태터널 및 초화류 식재	• 도시연접 진입부에 타도시와의 차별화 연출 • 인터체인지 및 톨게이트 디자인의 아트화
이벤트 경관거점	• 주요교차로 및 교통섬 등의 경관성 향상 • 가각부의 공지확보를 통한 개방감 확보	• 건축물가각부 및 교차부 이벤트공간 조성 • 교통섬에 상징수목, 초화류, 조형물 등 설치
문화경관 거점	• 문화재 주변 지역을 경관관리 • 문화재 인지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관리	• 인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탐방루트 설정 • 문화재 주변 문화시설에 대한 경관적 관리
권역중심 거점	• 권역별 개성을 부각시키는 랜드마크 건축물 • 권역별 주요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 특화	• 주변에서의 상징축 도입을 통한 중심이미지 • 야간경관을 통한 랜드마크 이미지 확보

□ 경관 중점관리구역계획

- 구미의 경관현황 중 잠재력을 극대화하고, 구미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한다.

● 낙동강 경관중점관리구역

- 구역범위: 구미시 내 낙동강 하천경계에서 500m 이내 구역
- 낙동강변 건축물의 개방감 있는 저층배치 유도
- 구미대교 상부조형물 설치, 산호대교, 남구미대교 LED설치
- 교량하부 및 고수부지를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
- 하천변 Eco Trail(자전거도로) 및 제방상부 조명폴 설치
- 제방상부에 조명폴을 설치하여 운치있는 야간경관 연출



● 제1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

- 구역범위: 구미국가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공부분 일대
- 낙동강변 산업건축물 입면 및 지붕 특화
- 금오산 및 천생산 방향으로의 통경축 확보
- 전면공지 확보를 통한 녹지대 조성 및 소공원화
- 설비시설 입면 개선 및 사업소 진입부 게이트 설치
- 1공단 리모델링 사업과의 경관적 연계



● 906번 지방도 경관중점관리구역

- 구역범위: 제2구미교~인동광장 906번 지방도,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
-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통한 금오산~천생산을 이어주는 광역녹지축 조성
- 구미역세권 및 제1산업단지 통과구간의 차별화된 경관연출
- 가로시설물의 관리 및 유사한 디자인 적용



● 구미역세권 경관중점관리구역

- 구역범위: 구미역사 전면 상업지역 및 후면 주거지역
- 문화로, 각산로, 역전로에 대한 상징적 테마를 부여
- 옥외광고물, 건축선, 저층부 디자인의 관리 및 통일
- 가각부 및 결절부의 건축선 이격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커뮤니티 공간 형성



● 선산읍 경관중점관리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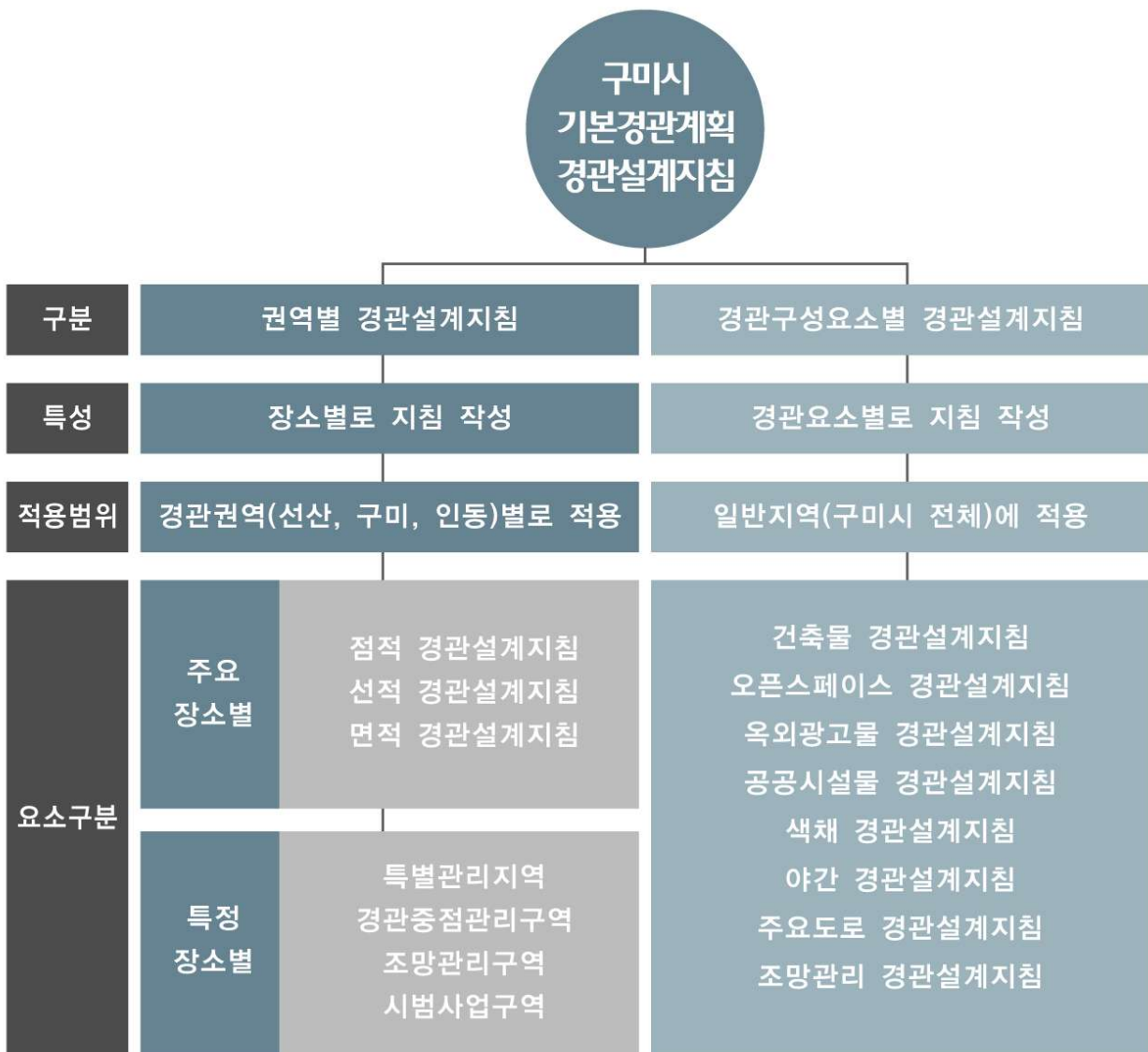
- 구역범위: 선산읍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
- 단계천을 중심으로 한 친수형 이벤트공간 조성
- 주민, 예술가, 학생 등의 참여를 통한 문화공간 형성
- 비봉산으로의 조망 확보
-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, 건축물의 자연적 재료 도입을 통한 녹지와 조화로운 주거경관 연출



□ 경관설계지침 수준 및 성격



□ 경관설계지침의 구분 및 작성 내용



□ 권역별 경관설계지침-선산경관권역

	장소	경관설계지침	비고
면적 구간	선산읍 상업지역	• 옥외광고물은 Natural image 테마부여를 권장한다.	특별관리구역
	죽장리 취락지	• 취락지 지붕은 적갈색 계열의 경사형지붕으로 통일한다.	시범사업구역
	고아읍 상업지역	• 옥외광고물은 Modern Image 테마부여를 권장한다.	특별관리구역
선적 구간	68번 지방도	• 지역수종을 테마가로수로 선정하여 식재한다.	
	제5산단 연결도로	• 진입부의 건축물 입면 및 옥탑부를 통일한다.	
	선산읍 단계천	• 복개구간을 철거하고, 가로공원 형태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.	중점관리구역
점적 구간	생태사진마을	• 기존에 설치된 예술품을 정비하고, 연결로를 확충 및 개선한다.	
	구미시청출장소	• 접근로에 조경공간을 확보하고, 경관조명을 설치한다.	

□ 권역별 경관설계지침-구미경관권역

	장소	경관설계지침	비고
면적 구간	구미역세권 상업지역	• 건축물 지붕은 유사성 있는 경사형 지붕으로 통일한다.	중점관리구역
	죽장리 취락지	• 산업시설물 외관색채를 개선한다.	시범사업구역
		• 건축선 이격을 통해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얹음벽을 설치한다.	
선적 구간	문화로	• 옥외광고물은 Variety Image 테마부여를 권장한다.	특별관리구역
	낙동강변	• 제방상부에 일정구간마다 조명폴을 설치한다.	중점관리구역
	구미천	• 건천시를 대비하여 친수광장 내 조형물을 설치한다.	
점적 구간	구미 I.C	• 녹지대를 조성하고 침단이미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한다.	
	원평네거리 하부도로	• 교량하부공간은 펜스 철거 후,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한다.	시범사업구역

□ 권역별 경관설계지침-인동경관권역

	장소	경관설계지침	비고
면적 구간	일선리문화재마을	• 주변에 신축시 문화재건축물을 고려하여 외관을 디자인한다.	
	국가산업5단지	• 옥상부에는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	
	도개면 취락지	• 건축물 입면 및 측면에 벽면녹화 등의 사용을 유도한다.	
선적 구간	25번 국도	• 낙동강 조망구간을 설정하고 투명방음벽을 설치한다.	
	67번 국도	• 국가산업3단지 내 위치한 사업소 진입부에 조명폴 설치 및 바닥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킨다.	
	인동체험축	• 가로시설물은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권장한다.	특별관리구역
점적 구간	창림저수지	• 선착장, 수변테크를 설치하여 수변레포츠공간으로 조성한다.	
	쌍암고택 주변	• 접근로에 조경공간을 확보하고, 경관조명을 설치한다.	문화재 관리구역

□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-건축물

구분	경관설계지침
규제 사항	- 공동주택지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장방형의 건축물 배치는 피한다. - 지붕의 형태는 지역별, 블록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적용하여 통일감 있도록 조성한다. - 상업지역은 건축선 및 1층부 높이를 통일하여 연속적이고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한다. - 공공건축물은 건축선을 최대한 이격하여, 전면공지를 휴식, 모임,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.
권장 사항	- 공동주택의 경계부에는 보행자의 진입 효율성을 고려하여 1곳 이상의 보행출입구를 확보한다. - 단독주택은 건축물 후퇴공간에는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한다. - 공업건축물은 담장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에 녹화, 휴식공간, 갤러리 등으로 조성한다. - 상업건축물은 상층부 건축선 후퇴를 통해 형태적 개방감을 유도하도록 한다. - 공공건축물은 권역특성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형태디자인 하는 것을 권장한다.

□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-오픈스페이스

구분	경관설계지침
규제 사항	- 국가하천(낙동강, 감천)변에는 식재폭을 충분히 확보하여, 대규모 녹지축을 형성한다. - 도심 내 수량이 확보되는 지방하천에는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. - 도로에 의해 단절된 녹지구간은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순환형 녹지체계를 구축한다. - 녹지가 부족한 가로에는 가로수 식재/조화류 식재를 통해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한다.
권장 사항	- 등산로 내 관리시설은 친환경적 재료사용을 권장한다. - 근린공원 내에는 일정공간에 장식벽 및 조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을 권장한다. - 국가하천변에 형성된 대규모 경작지는 경작지별로 테마를 부여할 수 있다. - 지방하천은 건천시를 대비하여 볼거리가 있는 시설물 및 운동공간 마련을 권장한다. -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개구간은 주차장 대신 가로형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.

□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-옥외광고물

구분	경관설계지침
규제 사항	- 가로형간판은 2층까지 설치하고,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한다. - 돌출형간판은 점멸방식의 조명사용을 금지한다. - 지주이용간판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. - 현수막은 교통,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, 교차로에 설치하는 금지한다. - 전기이용광고물은 네온사인, 점멸방식 등의 발광조명 사용을 금지한다. - 옥상간판은 채널형으로 디자인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.
권장 사항	- 재료는 건물 입면 재료를 고려하여 건축물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권장한다. - 지주이용간판은 건축물 내 입주한 업소를 감안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. -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광고물은 산업단지 색채와 유사한 톤의 색채사용을 권장한다. - 전기이용광고물은 신소재를 활용한 조명방식을 권장한다. - 커튼월(Curtain Wall)로 마감된 경우에는 유리면에 설치를 지양한다. - 벽보 설치하는 지양한다. 불가피하게 설치 할 경우, 지정게시판에 부착한다.

□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-공공시설물

구분	경관설계지침
규제 사항	• 시설물 배치 시 유사한 기능의 시설물은 통합 설치하도록 한다. •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규모로 설치한다. • 옹벽은 과장된 패턴,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한다. • 구미시를 상징하는 로고 및 C.I의 과도한 사용은 금지한다.
권장 사항	• 신체에 접촉하는 부위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 상해를 예방하도록 권장한다. • 공공시설물의 규격 및 크기 등은 유니버설한 디자인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. • 버스 및 택시쉼터 등은 기본모듈(크기, 형상, 사인 서체, 바탕색상 등) 통일을 권장한다. • 벤치는 화단, 가로 화분대 등의 시설물과 통합을 권장한다. • 간이 화장실은 야간이용을 고려하여 출입구 주변에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. • 전신주는 지중화하는 것을 권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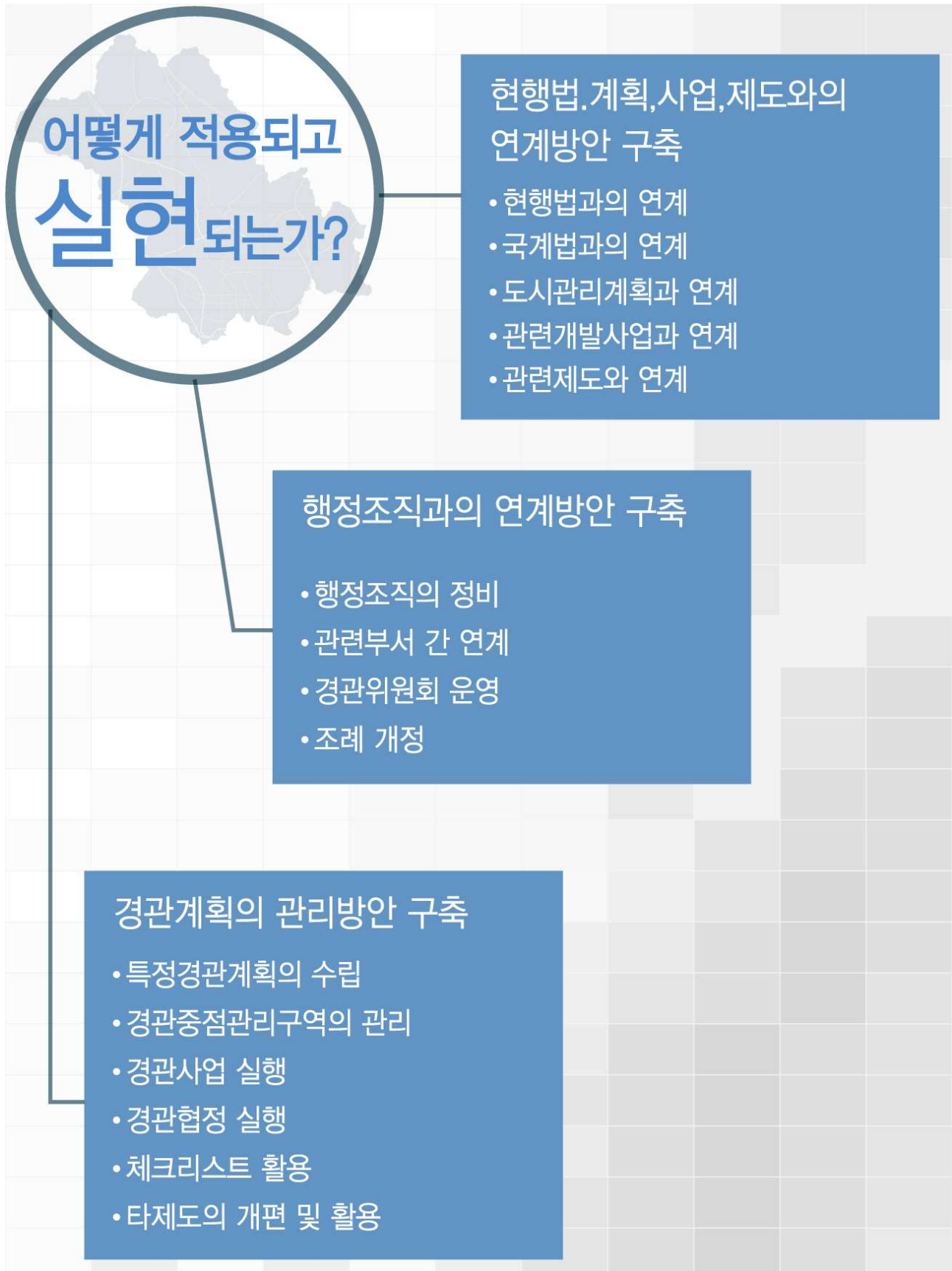
□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-색채

구분	경관설계지침
규제 사항	• 주조색으로 off-white계열의高明도 색채는 금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한다. • 공업시설은 원색 주조색을 금하고 한 가지 이상의 주·보조색으로 단조로움을 극복하도록 한다. • 넓은 면적이 발생 시 장식적인 그래픽 사용은 금하고 간결한 패턴으로 변화감을 부여한다. • 녹지 및 보행가로를 둘러싸는 펜스는 off-white계열을 금지하고 저채도 색채로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.
권장 사항	• 산지주변의 공동주택은 주조색 명도를 낮추어 주변과 조화된 안정된 색채계획을 유도한다. • 공동주택의 로고, 동번호, 마을명 등은 입면적에 알맞은 크기와 색채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. • 원색지붕(파란색, 주황색 등)은 회색, 회갈색 계열의 색채로 통일하는 것을 권장한다. • 신축건물 상업가도에 한하여 건물별 다양한 색채로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. • 소재색 사용을 권장하며 저채도의 색채로 사용하도록 한다.

□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-야간

구분	경관설계지침
규제 사항	• 공원의 종류 및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조도는 5~10lx 사이로 한다. • 상업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교차부를 명료하게 빛으로 강조한다. • 산업단지에서는 주변 주거지역에 빛 침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. • 야간 이용자가 많은 공공용지(공원, 경찰서, 문화공간)에서는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도록 한다. • 수변공간의 색온도는 2000~3000k의 색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.
권장 사항	• 주요공원의 경우 우범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벤트조명 도입을 권장한다. • 상업지역에서는 쇼윈도의 조명시간을 연장하여 커뮤니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. • 랜드마크 건축물 및 조형물은 부분적으로 컬러조명을 사용하여 다채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한다. • 습지대 및 생태보전지역에서는 경관조명의 사용을 지양한다. • 상업지역에서는 주간에도 조형성을 갖춘 조명기구 설치를 권장한다. 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도입을 권장한다.

□ 실행 및 유지관리 계획



《참 고 사 항》

□ 경관법

제6조(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경관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(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가 수립한다.

제8조(경관계획의 내용)

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4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(이하 “경관지구”라 한다)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(이하 “미관지구”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5.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
6.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제10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경관계획의 승인 등)

① 시장·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(이하 “경관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경관법 시행령

제3조(경관계획의 내용)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·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(이하 “경관사업”이라 한다)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(이하 “경관협정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경관의 보존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7조(경관계획의 승인 등)

- ① 시장·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

□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

제4조(경관계획의 내용) 영 제3조제3호의 경관의 보존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

1. 경관 분야별·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
2. 용도지역·지구, 주요 구역별,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
3. 야간경관 개선계획, 색체계획,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
4.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
5.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6. 중·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
7.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회랑 확보방안
8.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9.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